

연구수당 지급규칙

제 정 2024. 1. 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보수규정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연구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연구수당(연구활동비)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4)로 다음 각호의 자는 제외한다

- 퇴직,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연구년자, 교육훈련 파견, 출산휴가자,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차량운전의 직무만을 위하여 종사하는 자

제4조(지급액) 연구수당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사업수입의 5퍼센트 상당액을 계상하되, 개인별 지급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연구수당(월)	비 고
지급기준 (개인별)	원 장	700 ~ 1,000
	본부장	500 ~ 600
	실 장	400 ~ 500
	팀장/연구직	200 ~ 400
	팀 원	150 ~ 300

제5조(지급시기) 연구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연구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원장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24.1.1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